인쇄하기

무방문,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

영업점

KB 메디칼론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상품안내

대출신청 자격요건 및 대출거래 제한

- 병·의원, 약국 등 의료사업자와 노인요양의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 각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o 신용등급 BB(소매형SOHO5등급C)이상 고객
- 단, 의료 생협 및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
- ① 신용등급 BBB-(소매형3등급) 이상 (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30인 이상)
- ② 신용등급 BB+(소매형4등급A ~ 4등급C)이고 사업소득금액 1억원 이상
- (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50인 이상)
- o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계좌 KB국민은행 이체 필수
-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최저/ 최대)

- 연간매출액의 1/2과 연간 보험급여 수령액 중 적은 금액 범위 내
- o 사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추정 연간보험급여비 수령액 산출
- (추정금액의 1/2만 인정)
- ☞ 추정 연간보험급여: 보험급여 수령액 ÷ 사업기간일수 X 36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 ㅇ 수시상환방식(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1년 이내 원칙
- 상환방법: 채권양도를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입금으로 자동 상환

금리 및 이율

적용이율 결정방법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또는 3개월 변동금리 적용
- 대출금리예시(소매형SOHO 1등급, 1년 일시상환, 고정금리, 2024.11.04 기준)
- o 기준금리: 연 3.22%
- o 가산금리: 연 1.70%p ~ 연 2.20%p

- ㅇ 최종금리: 연 4.92% ~ 연 5.42%
- ※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변동금리 : 「매 3/6/12개월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 고정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방식
-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www. Kofia.or.kr)가 공시하는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

영업일의 종가를 적용

- *3개월 단위: CD91일물 유통수익률
- *6개월 단위 이상: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 상품기본우대금리
- o 소매형소호: 1등급 연 0.5%p 2등급 연 0.3%p 3등급 0.1%p
- ㅇ 기업형소호 : A이상 연 1.3%p A- 연 1.0%p BBB+ 연 0.5%p BBB 연 0.3%p BBB- 연 0.1%p
- o 법인: A이상 연 1.4%p A- 연 1.0%p BBB+ 연 0.8%p BBB 연 0.5%p BBB- 연 0.1%p
- ☞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급여이체 우대금리(연 0.1%p),CMS우대금리(연 0.1%p), 그룹시너지우 대금리(연 0.2%p)
- ☞ 가산금리: 고객 신용등급, 담보비율 및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이자계산 방법

- 수시상환방식(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계산
-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원리금상환 방법

- 수시상환방식(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한도 내 자유로이 상환하되, 만기일에 전액 상환

원금 또는 이자 상화관련 제한

- 해당사항 없음

연체이자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연3%p]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 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수수료 등 부대비용

- 한도관련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선택
- o 한도약정 수수료: 여신한도 약정금액 X 0.3% X 약정기간 ÷ 365 (윤년은 366)
- o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금액 합계액 X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 ÷ 365(윤년은 366)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인지세 부과 기준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ㅇ[근저당권] 설정등기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부담,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 ㅇ[담보신탁]이용 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담보신탁 처분 시 고객 부담
- 보증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혹은 한도약정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미사용금액합계액 X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365(윤년은 366)

※ 한도소진율에 따른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

10%미만: 0.5%

10%이상 ~ 30% 미만 : 0.4% 30%이상 ~ 40%미만 : 0.3% 40%이상 ~ 50%미만 : 0.2% 50%이상 ~ 70% 미만 : 0.1%

70%이상 : 없음

[한도약정수수료]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0.3%) X 약정기간/365(윤년은 366)

이자부과시기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예시) 매월 (00)일에 지급합니다]

이용안내

담보 및 보증 제공 여부

- 건강보험급여 청구채권 양도 담보

유의사항 및 기타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 만기도래 시 KB국민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 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 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개시일 : 2024.11.04 - 종료일 : 2026.10.31

대출실행할 경우 부가 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수료 우대 제공 가능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 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 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차 대출상품 일부 변경(변경 적용일: 2016.07.01)
-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o 병의원, 약국 등 신용등급 BB+(소매형5등급) 이상 의료사업자 및 정원 3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운영사업자. 단, 의료생협 및 노인요양시설은 BBB-(소매형 5등급)이상 (변경후)
- o 병의원, 약국 등 신용등급 BB(소매형5등급) 이상 의료사업자 및 노인요양의료시설사업자.
- 단, 의료생협 및 요양병원, 노인요양의료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
- ① 신용등급 BBB-(소매형3등급) 이상(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30인 이상)
- ② 신용등급 BB+(소매형4등급)이고 사업소득 1억원 이상
- (노인요양의료시설은 정원 50인 이상)
- 2차 연체여신에 대한 지연배상금률 변경(변경적용일: 2018.04.27)
-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o 지연배상금률 적용방법은 대고객금리에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한다. 다만, 대고객금리가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고객금리에 연 2.00%p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o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6.0%p,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연 7.0%p, 3개월 초과인 경우에는 연 8.0%p를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변경 후)
- o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o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여
- 3차 적용이율 결정방법 3개월 변동금리 추가 도입(변경적용일: 2018.07.17)
-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전)

- ㅇ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 o 대출금리예시 (소매형SOHO 3등급, 무보증신용, 고정금리, 2018.5.8 기준)
- 기준금리: 연 1.95%
- 가산금리: 연 1.86%p ~ 연 2.18%p
- 최종금리: 연 3.81% ~ 연 4.13%

(변경후)

- ㅇ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고정금리 적용
- o 대출금리예시 (소매형SOHO 3등급, 무보증신용, 고정금리, 2018.8.2 기준)
- 기준금리: 연 1.96%
- 가산금리: 연 1.50%p ~ 연 2.00%p
- 최종금리: 연 3.46% ~ 연 3.96%
- 나. 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부
- 4차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 추가(변경적용일: 2018.12.07)
-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 (1) 수수료 등 부대비용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명시 (변경 전)
- ㅇ 대출 실행 시(후)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미사용금액 합계액* X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 ÷365(윤년은 366)
- * 미사용금액 = 한도약정액 □ 마감잔액 기준 대출잔액
-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대 0.5%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기본수수료율(0.3%)*약정기간/365(윤년은 366)
-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와 한도약정 수수료는 중복 징수 배제
- ㅇ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변경 후)
- ㅇ 한도관련 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선택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미사용금액 합계액* X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
- ÷365(윤년은 366)
- * 미사용금액 = 한도약정액 □ 마감잔액 기준 대출잔액
-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도소진율에 따라 최대 0.5%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 기본수수료율(0.3%)*약정기간/365(윤년은 366)
-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와 한도약정 수수료는 중복 징수 배제
- o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인지세 부과 기준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 ㅇ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등기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는 은행부담, 감액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부담,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부담
- [담보신탁]이용 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비용은 은행이 부담, 담보신탁 처분 시 고객 부담
- ㅇ 보증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여
- 5차 가산금리 변경 (변경적용일: 2020.6.22)
- 가. 변경 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변경 전)

o 가산금리 상한: 2.00%p

(변경 후)

- o 가산금리 상한: 2.20%p
- o 대출금리예시(소매형SOHO 4등급B, 1년 일시상환, 고정금리, 2021.02.22 기준)
- 기준금리: 연 0.84%
- 가산금리: 연 1.80%p ~ 연 2.20%p
- 최종금리: 연 2.64% ~ 연 3.04%
- 나.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부
- 6차 :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관련 내용 추가(2024.11.04)

가.변경전후의 거래조건 비교 :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관련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만 기 경과 후 기한의이익상실 안내

(변경전)

-(신설)

(변경후)

-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한 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 다.

나.기존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여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73-2호(2024.11.04)

(유효기간 : 2024.11.04 ~ 2026.10.31)